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02

## 서 울 행 정 법 원

2001. 7. 25. 판결선고	인
2001. 7. 25. 원본영수	

## 제 1 1 부

### 판 결

사 건 2000구32044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참여연대

피 고 서울특별시장

변 론 종 결 2001. 6. 20.

### 주 문

- 피고가 2000.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사본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관 부분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정보에 관해 사본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 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예산감시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2000. 6. 29. A와 함께 학술연구 및 행정감시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및 서울특별시의 1999년 주요문서목록 또는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0. 7. 26. 원고에 대하여, 위 공개청구된 정보 중 ‘1999년 주요문서목록’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행정정보공개 자료실에 공개되어 있음을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정보’ 부분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특정한 사인은 가리고 공개하되 그 공개방법을 직접공개 중 복사한 사본의 열람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처분(이하 피고가 이 사건 정보에 관해 위와 같이 복사한 사본의 열람이라는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함으로써 원고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서, 다만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관 또는 기구 부분의 정보에 관하여는 당초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바 없고,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데 불과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내지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라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법에 구체화되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참조), 법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공공기관에게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의하여 원고는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받고 따라서 당연히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 할 것이며,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행정쟁송의 일반원리를 규정한 것일 뿐 정보공개청구권 외에 별도의 법률상 이익 침해를 추가로 제소요건으로 규정하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인 피고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



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본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복사한 사본의 열람이라는 방법으로 이를 공개한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도 아니고 ‘그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조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을 원칙적 또는 선행적인 공개방법으로 하여 어떠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먼저 열람을 하고, 그 결과 사본이 필요하거나 복제물이 필요한 경우 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공개를 요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법 제9조, 제12조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여부결정처분에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현금출납부 204권 14,778매, 일상경비출납부 233권 5,286매, 집행서류관계철 798권 46,718매로 합계 1,235권 66,782매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문서로서 원고에게만 사본을 하여 준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할 것임이 명백하여 피고의 행정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첫째 아무리 사본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단체나 시민들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올 경우 막대한 양의 사본을 반복적으로 복사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고



유업무추진의 지장 및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둘째 보통의 소송에서는 권리자가 1인이고 한번 판결이나 이행이 있게 되면 권리소멸 내지 중복제소금지가 있게 되나 이 사건 정보공개와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제각기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수많은 반복청구에 계속 응하여야 하는 불이익 모순이 생기며,셋째 사본공개를 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시의 사용목적 외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반면, 원고로서는 사본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학술연구와 행정감시 등의 그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가 복사한 사본의 열람이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것은 피고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속한 결정이므로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경찰청에 민생 치안방범활동지원비로 배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위 재배정 관련서류만을 보관하고 있고, 위 재배정된 예산의 구체적인 지출증빙은 경찰청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바, 이와 같 이 서울특별시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미보유 정보는 사본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최근 피고는 행정의 전문성·공개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절차 및 자문회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 과정에 수많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그들의 전문지식을 매우 긴요하게 활용함과 더불어 공개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법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여 개인의 사생활보호,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 및 법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보장에 의해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바, 만일 행정절차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가 함부로



공개된다면 아무도 행정절차에 관여하여 협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사건 정보 중 그 특성상 수령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정보는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 나. 관련 법조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



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소등록번호 및 주소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②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거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자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 (정보제공)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제18조 (비용부담)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 다. 판 단

(1) 사본 교부의 방법에 의한 공개청구에 대해 복사본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열람이 우선되는지 여부

법 제2조 제2호는 공개를 정의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의미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있어 공개방법으로 열람을 원칙적 또는 선행적인 공개방법으로 규정하고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예외적 또는 부차적인 공개방법으로 정한 것이라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21조 및 법시행령 제14조 등의 각 규정들과 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선택하도록 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과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부과하는 외에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을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각 호로 정



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닌 한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 그 정보가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으로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이를 비공개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청구된 공개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정보의 공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정보공개 및 비공개결정 또는 정보공개의 방법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정보가 법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시의 사용목적 외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거나 사본열람에 의한 공개만으로도 그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

(d) 이 사건 정보가 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이 사건 정보가 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보기로 한다.

먼저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이 사건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이 아님은 명백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정보의 양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관 또는 기구 부분의 정보에 관하여는 공개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에 상당한 양이 줄어들 것임이 명백한 점, ②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정보의 보유·관리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서울특별시 산하의 여러 기관과 기구들에 산재해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해당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과 기구들의 개별 정보의 양은 그다지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정보의 양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청구시 해당 기관 또는 기구의 정보에 관해 개별적으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지만 해당 기관 또는 기구를 달리하여 위와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한번의 청구량이 과다하다거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바, 이러한 경우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③ 피고 역시 원고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이미 이 사건 정보의 복사본을 만들어 놓았음을 알 수 있는바, 과연 피고가 위와 같은 복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는지에 관해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법과 법시행령에 따라 사본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할 경우 청구인에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본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가 선택한 공개방법인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복사본의 열람이라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위법하다.

### (2) 미보유 정보를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사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제3조가 정보공개의 대상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이 사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피고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공무원에 의하여 최종 지출되고 그에 대한 지출증빙이 작성되어 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미보유 정보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에 원래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별도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을 이유로 한 주장

살피건대, 공개청구된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해당 비공개대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그 공개청구된 정보 전체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제한하고 복사본 열람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하는 것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거나 또는 그와 같이 공공기관에 의한 공개방법의 선택이 적법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02

게 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고(다만 그 공개방법만을 원고의 선택과 달리하여) 그 공개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특정한 사인은 가리고 공개한다고 하였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선택한 공개방법과 다른 공개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7. 25.

재판장 판사 조용호

판사 김동석 \_\_\_\_\_

판사 고홍석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02

## 제 1 목 록

(제 1 목 록 삭제)

## 제 2 목 록

(제 2 목 록 삭제)